

글로벌미래교육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침

시행 : 2023. 03. 01.

제1조 (목적) 본 지침은 글로벌미래교육원규정 제6장 제29조(장학)에 의거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본 지침은 글로벌미래교육원 장학업무에 적용한다.

제3조 (장학위원회)

- ①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고 함)를 둔다.
- ② 장학위원회는 본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주임교수·직원 및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
- ③ 장학위원회의 간사는 직원으로 한다.
- ④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장학 정책과 계획, 기준의 수립
 - 2. 장학생의 선발
 - 3.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 사항

제4조 (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등)

- ①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.
 - 1. 성적장학 : 성적우수자
 - 2. 모범장학 : 본 교육원 발전에 기여한 자
 - 3. 산학협력장학 : 산학협력과정생 중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모범장학, 성적장학 등을 두며,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통해 종류를 달리할 수 있다.
 - 4. 보훈장학 : 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손자녀
 - 5. 북한이탈주민장학 :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으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새터민
- ② 상기 외 교외 또는 기타장학금의 종류, 지급기준, 지급액 등은 장학금을 기탁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,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본 장학위원회가 정한다.

제5조 (장학금의 지급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. 장학생인 자가 규정 및 지침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
- 2. 장학금 지급 학기에 수강이 진행 중이지 아니한 자
- 3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
- 4. 기타의 사유로 장학금 수혜 자격을 잃은 자로 장학위원회가 판단한 자

제6조 (이중지급 금지) ① 본 지침의 각종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본 교육원장이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
- ② 전형에도 불구하고, 동일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의 교내 또는 교외 장학금을 이중 지급할 경우,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교육원장이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- ③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.

- 1. 근로성 장학
- 2. 포상성 장학
- 3. 학생회 활동 장학
- 4.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장학

제7조 (장학금 지급기한)

장학금 지급기한은 학기단위로 한다.

제8조 (장학금 신청) ①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을 소정기간 내 완료하여야 하며,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. 단, 교원의 추천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는 장학은 제외한다.

- ② 장학금 신청은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.

- ③ 성적장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수혜할 수 있다.

제9조 (장학생추천) 본 교육원 소속교수는 학생으로서 성적, 품행, 가정형편, 학업성취도 등을 고려하여 상담지도 학생 중 장학생 후보자를 장학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.

제10조 (신청서류 제출 등)

- ① 별도 신청이 필요한 학생은 행정실이 요구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본 지침에 따라 필요시 추가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.

제11조 (장학생 선발 및 선발기준)

- ① 본 교육원장은 배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.
- ② 장학금 지급기준이 되는 성적은 재학생의 경우 평점을 기준으로 한다. 평점이 같아 세부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장학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세부 기준을 정한다.
- ③ 교외·기타장학금은 경제적 사정, 학업태도, 면담 결과 등을 통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12조 (장학금의 반환)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장학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3조 (보칙)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본 교육원장이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부 칙

본 지침은 202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